

장학위원회 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 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직기간으로 한다.

제 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교 내·외 장학금 관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장학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학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제 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과에서 하고, 간사를 둔다.

부칙

1. (시행일)이 규정은 2000년 3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